



일반 정보

F5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DACA) 고려를 어떻게 요청하는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2012년 6월 15일에 국토안보부 장관은 어린이로서 미국에 왔으며 몇몇 주요 지침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2년 기간(갱신 조건)의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예 조치를 허락 받은 사람들은 노동 허가를 받을 자격도 있습니다.

이 지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 가능한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만 유예 조치의 고려 대상이 됩니다. 결정은 장관의 공문에 명시된 지침에 의거 간별로 내려질 것입니다.

내가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할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아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었으며,
2. 16회 생일에 이르기 전에 미국으로 왔으며,
3.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미국 내에 거주하였으며,
4. 2012년 6월 15일에 그리고 미국이민국에 요청을 할 당시에 실제로 미국 내에 있었으며,
5. 2012년 6월 15일에 합법적 지위가 없었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2년 6월 15일이나 그 이전에 합법적인 이민 지위를 가진 적이 없거나 또는
 -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획득한 합법적인 지위나 일시적 입국 허가가 2012년 6월 15일 현재 만료된 상태,
6. 현재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로부터 수료증을 받았거나 종합교육개발(GED) 증서를 받았거나 미국 해안경비대나 군대의 명예 제대 재향군인이며, 아울러
7. 중죄, 중대한 경범죄, 3회 이상의 기타 경범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달리 국가 안보나 치안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어떻게 요청하는가?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양식인 **I-821D**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해서 올바로 서명하여 **I-765 양식**, 취업 허가 신청서 및 **I-765WS 양식**. I-765 양식 작업지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된 I-765 양식을 정확한 신청료와 함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예 조치 고려에서 실격 처리됩니다. I-821D 양식은 신청료가 없지만, I-765 양식의 경우 신청료 \$380과 생체인식 서비스 수수료 \$85, 도합 \$465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설명서를 읽어 모든 필수 요청 증빙 서류가 반드시 제출되도록 하십시오. 자세한 제출 요령에 대해서는 www.uscis.gov/I-821D 와 www.uscis.gov/I-765를 참조하십시오.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www.uscis.gov/childhoodarrivals를 참조하십시오.

참고사항: 귀하의 요청이 올바로 제출되었다는 확인 영수증을 받으시면, 생체인식 서비스(사진 및 지문)를 위한 신청지원센터 방문 약속 통지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통지서에 있는 지시사항을 반드시 읽고 따라야 합니다. 생체인식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귀하의 요청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을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가?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은 우편으로 미국이민국 사서함(Lockbox)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서 우송처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지침을 보려면 www.uscis.gov/I-821D 를 방문하시거나 **(800) 375-5283** 번의 미국이민국 전국 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최초 요청과 함께 어떤 증거물을 제출해야 되는가?

최초 요청의 경우, 증거물은 위의 “내가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할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아는가?”라는 제목의 항목에 나열된 지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에는 다음을 입증하는 증거물이 포함됩니다:

1. 요청자가 1981년 6월 15일 이후에 태어났으며,
2.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하였으며,
3.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미국 내에 거주하였으며,
4. 2012년 6월 15일에 미국 내에 있었으며,
5. 2012년 6월 15일에 합법적 지위가 없었으며,
6. 현재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그로부터 수료증을 받았거나 종합교육개발(GED) 증서를 받았거나 미국 해안경비대나 군대의 명예 제대 재향군인이며, 아울러
7. 추방 절차를 받은 적이 없거나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위한 귀하의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케이스가 종결된 경우 제출 당시에 최소한 15세이어야 합니다.

본 지침을 충족하는 구체적 문서에 관한 정보를 보시려면, www.uscis.gov/I-821D에서 I-821D 양식에 대한 설명과 www.uscis.gov/childhoodarrivals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읽으십시오.

현재 요청자의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졌거나, 자발적 출발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이 절차가 나에게 적용됩니까?

예. 이 절차는, 추방 절차를 겪은 적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최종 명령이 내려졌거나, 자발적 출국 명령이 내려진 사람들을(그들이 이민 구금 하에 있지 않는 한) 포함하여 고려 지침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민 구금 하에 있지 않으면 유예 조치 고려 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 요청서를 미국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졌거나, 자발적 출발 명령이 내려진 경우 제출 당시에 15세 이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케이스는 개별적으로 고려됩니다.

가능한 경우 이민 판사가 발급한 추방 명령이나 기타 문서 또는 이민항소위원회의 최종 결정문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 요건은 추방 절차가 진행 되어온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단기 출국이 2007년 6월 15일 아래로 미국내 연속 거주 지침을 충족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에서 잠시 동안 우연하게 선의로 떠난 것은 연속 거주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부재가 2012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며 다음 조건들을 충족한 경우 그 부재는 잠시 동안 우연하게 선의에 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단기간이었으며 부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되었으며,
2. 입국 금지, 추방 또는 출국 명령 때문이 아니었으며,
3. 자발적 출국 명령 또는 입국 금지, 추방 또는 출국 절차에 처하기 전에 행정적 자발적 출국 허가 때문이 아니었으며, 아울러
4. 부재의 목적 및/또는 미국 외에 있는 동안 요청자의 활동이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2012년 8월 15일이나 그 이후에 미국 외로 무단 여행하는 경우 귀하의 연속 거주 기간이 중단될 것이며 귀하의 경우 본 절차에 의거한 유예 조치가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재가 잠시 동안 우연하게 선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 문서에 관한 정보를 보시려면, www.uscis.gov/I-821D에서 설명과 www.uscis.gov/childhoodarrivals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읽으십시오.

나의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 검토 시 미국이민국은 신원 조사를 실시하는가?

예. 미국이민국이 직권 재량을 행사하기 전에 귀하는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예외적 상황이 있지 않은 한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중죄;
- 중대한 경범죄;
- 3회 이상의 경범죄(같은 날 발생하지 않았고 같은 행동, 누락 또는 위법행위의 계획으로부터 초래되지 않음), 또는
-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해 달리 위협 제기.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요청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청자의 I-821D 양식, I-765 양식 및 I-765WS 양식이 접수된 후에, 미국이민국은 필수 수수료, 최초 증거자료 및 서명을 비롯하여 요청이 완전하게 제출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요청이 완전하면 미국이민국은 수령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런 다음 미국이민국은 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을 위한 신청지원센터 방문 일정을 알리는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G-1145](http://www.uscis.gov/G-1145) 양식인 ‘신청/청원 수락에 대한 전자 통지’를 작성함으로써 요청자의 양식이 수락되었음을 알리는 이메일 및/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받도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을 보려면 www.uscis.gov/G-1145를 참조하십시오.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은 개별적으로 건별로 검토됩니다. 미국이민국의 결정을 서면으로 요청자에게 통보해드립니다. 미국이민국은 추가 정보나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미국이민국 사무소에 출두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요청의 거부를 재심사/재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상소나 별의는 없습니다.

나의 경우에 추방 조치 유예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가?

예.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의 갱신 고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요청은 건별로 고려됩니다. 미국이민국이 귀하의 케이스를 위해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에 의거한 재량 행사를 갱신할 경우, 귀하는 추가로 2년 동안 유예 조치를 받게 되며, 귀하가 취업에 대한 경제적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 그 기간에 걸쳐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의 간신을 요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당초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에 대한 지침(상기 참조)을 충족하였으며 또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귀하는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의 간신 고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일시입국 허가 없이 2012년 8월 15일 또는 그 이후에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았으며,
2. 승인된 귀하의 최근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요청을 제출한 이래로 현재까지 계속 미국 내에 거주하였으며, 아울러
3. 중죄, 중대한 경범죄, 3회 이상의 경범죄 판결을 받지 않았으며 달리 국가 안보나 치안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신 요청은 현재의 유예 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약 120일 (150일 이상은 불허) 전에 미국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의 간신을 요청하려면, I-821D 양식, I-765 양식 및 I-765WS 양식을 I-765 양식 제출료 \$380 및 생체인식 서비스 수수료 \$85, 도합 \$465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이전에 승인된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요청에서 미국이민국에 제출하지 않은 추방 절차 또는 범죄 경력에 대한 **새로운** 문서가 있지 않는 한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의 간신 요청 시 추가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경우에 미국이민국이 유예 조치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나는 추방 절차를 받게 됩니까?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를 위한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 미국이민국은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CE)에 대한 케이스 회부 및 출두 통지(NTA) 발급에 관한 이민국의 정책 지침을 적용할 것입니다. 요청자의 케이스가 형사 범죄, 사기 또는 국가 안보나 치안에 대한 위협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요청자의 케이스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추방 절차를 위해 이민관세집행국에 회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www.uscis.gov/nta를 방문하십시오.

이 절차가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를 받은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합니까?

아닙니다. 본 절차에 의거한 유예 조치는 추방 조치를 유예하는 재량 결정일 뿐입니다. 동 조치는 직권 재량 조치이며 귀하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나의 요청에서 내가 공유한 정보가 이민 집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어떤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귀하의 요청에서 제시한 정보는 www.uscis.gov/nta에서 볼 수 있는 미국이민국의 출두 통지 안내에 설명된 기준에 의거 출두 통지 발급 또는 미국이민관세집행국에 대한 회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이민 집행 절차를 위한 목적으로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CE) 및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절차에 따라 케이스가 유예된 사람들은 이민관세집행국(ICE)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추방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이민관세집행국 및 관세국경보호국을 비롯한 국가 안보 및 법 집행 기관과 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른 목적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의 고려를 지원하기 위해, 사기성 주장의 파악이나 방지를 위해, 국가 안보를 위해 또는 형사 범죄의 수사나 기소를 위해. 동 정보 공유 조항은 유예 조치 요청자 이외에 가족 및 보호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본 정책은 통지 없이 언제든 수정, 대체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일체의 행정, 민사 또는 형사 건에 있어서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든 실질적이든 절차적이든 법으로 집행 가능한 일체의 권리나 혜택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며, 실제로 조성하지도 않으며, 그런 목적으로 의존되어서도 안됩니다.

주요 정보

본 안내서에 언급된 주요 미국이민국 양식	양식 #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I-821D
취업 허가 신청	I-765
I-765 작업지	I-765WS
신청/청원 수락에 대한 전자 통지	G-1145

본 안내서에 언급된 주요 미국이민국 웹사이트	웹사이트 링크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절차에 대한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	www.uscis.gov/childhoodarrivals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 조치 고려 양식	www.uscis.gov/I-821D

본 안내서가 더 필요하거나 다른 고객 안내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www.uscis.gov/howdoi를 방문하십시오.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일부 신청서를 전자 제출하거나, 신청서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위해서도 www.uscis.gov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으면, 인근 도서관을 이용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없으면, 다음

고객 서비스 번호로 문의하십시오: (800) 375-5283

청각장애인용 TDD: (800) 767-1833

면책성명: 본 안내서에는 이민국의 규칙 및 절차를 일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나 법규에 대해서는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이민법은 복잡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의 모든 면을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면허 변호사나 이민항소위원회(BIA)의 인정을 받은 비영리 대리인의 변호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